

지도자 규정

(제25차 개정 2022. 4. 28.)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지도자 규정은 한국스카우트연맹 헌장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제정 시행한다. (개정 01. 12. 29.)

제2조(목적) 이 지도자 규정은 한국스카우트연맹 헌장(이하 헌장이라 칭한다) 제15조에 의한 지도자 자격 및 종별을 규정하여 지도자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질을 향상,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 12. 29.)

제3조(업무의 관장) 본 연맹 지도자 자격에 관한 업무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본부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99. 6. 22.)

제4조(지도자의 종별) 헌장 제15조 제2항에 의한 지도자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훈육지도자는 다음의 직책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 가. 단위대의 대장 및 부대장
 - 나. 단의 단대장
 - 다. 각급 조직체의 커미셔너 (개정 04. 12. 16.)
 - 라. 훈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마. 훈련팀 (개정 19. 12. 18.)
 - 바. 로버스카우트 (신설 00. 2. 25.)
2. 협조지도자는 다음의 직책을 담당하는 자원 지도자를 말한다.
 - 가. 단위대의 대위원 및 육성단체 대표자
 - 나. 지구연합회의 지구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명예회의의 위원
 - 다. 지방·특수연맹의 커미셔너를 제외한 임원 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정 09. 11. 13.)
 - 라. 중앙본부의 커미셔너를 제외한 임원 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개정 04. 12. 16.)
3. 전종지도자는 본 연맹의 각급 조직체의 유급 직원으로서 상급훈련과 전종지도자 행정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를 말한다.

제2장 훈육지도자

제5조(훈육지도자의 정의) 이 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실천, 궁행(□□)하는 인격과 지도력을 구비한 제4조1항에 열거한 직책에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87. 2. 20.)

제6조(제 자격증의 교부) 연맹이 발급하는 지도자의 자격증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10. 11. 25.)

1. 훈육지도자의 자격증은 지도자훈련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총재 명의로 교부한다.
2. 야영지도자 자격증은 지도자훈련 상급과정을 이수한 후 총재 명의로 교부한다.
3. 우드배지 증서는 지도자훈련 상급과정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의 실습과정을 거친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방·특수연맹의 확인을 거쳐 총재와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 명의로 교부한다. (개정 20. 3. 14.)
4. 커미셔너 자격증서는 총재 명의로 교부한다.
5. 종별강사자격증은 종별강사과정을 이수한 후 총재 명의로 교부한다. (개정 17. 2. 10.)

제7조(대장 및 부대장) 대장 및 부대장은 본 연맹의 훈육프로그램을 직접 대원들에게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대위원회가 선출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스카우트 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활동의 지도와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86. 2. 21.)
2. 대의 비품과 재산의 관리 및 타대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3. 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 활동의 보고와 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4. 기타 발전적인 스카우트활동의 지도 관리 (개정 86. 2. 21.)

제8조(단대장) 단대장은 단 내의 각급 단위대의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위대를 총괄하는 지도자로서 단위원회가 선출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회의의 의장으로서 단회의를 주관한다.
2. 단 내의 각급 단위대를 지도 감독하며, 부문별 대장과 부대장을 지도한다.
3. 단위원회에 단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단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4. 단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지구연합회 및 지방·특수연맹과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09. 11. 13.)

제9조(커미셔너) 각급 조직체의 커미셔너는 커미셔너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연맹 훈육의 기본원칙과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며, 담당 조직체의 임원으로 스카우트 활동 전반에 걸친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8. 10. 31.)

- ① (삭제 02. 2. 27)
- ② 부득이한 경우 선 임명, 후 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커미셔너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04. 12. 16.)

③ 각급 조직체 커미셔너의 업무수행은 중앙커미셔너회에서 정하는 ‘커미셔너 직무기술서’에 의하여 수행한다.(신설 22. 4. 28.)

제10조(훈련팀의 임명 및 임무) 훈련팀은 우드배지 자격을 소지한 지도자로 최근 3년간 훈련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과 지방·특수 연맹의 추천으로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이 임명하고, 본 연맹의 각급 훈련의 실시 및 기준향상과 질서유지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 3. 14.)

제10조의 2(훈련팀의 재임명) 훈련팀의 재임명은 지도자훈련 운영 규정 제20조의 재훈련과정을 이수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이 재임명한다. (개정 20. 3. 14.)

1. 각급 지도자훈련 봉사
2. 각종 훈육활동봉사
3. 재훈련
4. 기타 스카우트 활동 참여

제11조 (삭제 19. 12. 18.)

제12조(훈련부교수의 자격증 교부) 훈련부교수 자격증은 훈련부교수과정 (CALT/Course for Assistant Leader Trainers)을 이수 후 자격을 구비한 지도자에게 총재와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의 명의로 교부한다. (개정 20. 3. 14.)

1. (삭제 11. 9. 22.)
2. (삭제 11. 9. 22.)
3. (삭제 11. 9. 22.)
4. (삭제 11. 9. 22.)
5. (삭제 11. 9. 22.)
6. (삭제 11. 9. 22.)

제13조(훈련교수의 자격증 교부) 훈련교수 자격증은 훈련교수과정(CLT/Course for Leader Trainers)을 이수 후 자격을 구비한 지도자에게 총재와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의 명의로 교부한다. (개정 20. 3. 14.)

1. (삭제 11. 9. 22.)
2. (삭제 11. 9. 22.)
3. (삭제 11. 9. 22.)
4. (삭제 11. 9. 22.)
5. (삭제 11. 9. 22.)

(지도자 규정)

제13조 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제12조 및 제13조의 심사위원회는 훈련 교수 중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 12. 18.)

② 자격심사위원회는 훈련교수와 훈련부교수 및 그 수강대상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개정 19. 12. 18.)

제14조(훈련팀의 자격유지) ① 훈련팀의 자격 상실은 이 규정 제16조에 준한다. (개정 19. 12. 18.)

② 지도자 자격이 회복된 지도자는 훈련팀 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19. 12. 18.)

제15조 (삭제 04. 12. 16.)

제16조(훈육지도자의 자격 상실) 훈육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명예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스카우트 활동 기본원칙과 질서유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지도자 (개정 86. 2. 21.)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동조한 지도자
3. 청소년의 교육상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4. 연차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지도자

제3장 협조지도자

제17조(협조지도자의 정의) 협조지도자는 본 연맹에 참여하는 훈육지도자 이외에 본 연맹의 이념을 찬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18조(육성단체대표자) 육성단체 대표자는 단위대 육성기관의 대표자로서 당연직 지구위원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위원회의 구성과 지휘 감독
2. 단위대의 시설과 경비 지원 (개정 86. 2.21)
3. 지구연합회 또는 지방·특수연맹과의 유대 관계 유지 (개정 09. 11. 13.)
4. 기타 단위대 육성에 관한 업무

제19조(대위원) 단위대 육성단체는 5명 이상의 대위원을 선출하여 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케 한다.

1. 대장, 부대장의 임명 및 훈련 지원
2. 대 집회실의 제공
3. 대재정의 조달 및 집행

4. 대의 재산 및 기재의 관리
5. 스카우트 활동의 기본방침과 육성단체의 요구사항에 따른 대장에 대한 지원
6. 대의 영속을 위한 운영 유지
7. 대의 야외활동을 위한 지원
8. 진급 면접위원회 참석
9. 월별 대위원회 참석
10. 기타 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단위원) 동일 육성단체 내에 단을 구성 할 경우에는 육성단체는 7명 이상의 단위원을 선출하여 단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하여 수행케 한다.

제21조(지구 및 지방임원) 지구 및 지방임원 중 커미셔너를 제외한 임원은 협조 지도자로서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총회에서 선출하고 지구 및 지방·특수 연맹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운영위원은 지방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09. 11. 13.)

제22조(중앙임원) 중앙임원 중 커미셔너를 제외한 임원은 협조지도자로서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고 본 연맹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04. 12. 16.)

제23조(명예임원) 본 연맹 정관 제19조 및 헌장 제59조, 제111조에 의한 명예임원은 협조지도자로서 각급 조직체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24조 (삭제 04. 12. 16.)

제25조(협조지도자의 자격 유지) 협조지도자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그 자격이 유지된다.

1. 매년 연차등록을 등록기일 내에 필하여야 한다.
2. 협조지도자는 스카우트 활동의 기본 원리와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조직체 및 단위대의 운영권자로서 책임을 완수한다.
3. 협조지도자는 교육자적인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26조(협조지도자의 자격 반환) 협조지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명예 회의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그 자격이 반환된다.

1. 연차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도자

2. 명예회의에서 자격정지 또는 제적된 지도자
3. 연간 스카우트활동 참여도가 극히 부진한 지도자
4.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생활을 하는 지도자
5. 기타 협조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제4장 전종지도자

제27조(전종지도자의 정의 및 임명) 전종지도자라 함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유급직원을 말하며 임명에 관한 세부규정은 취업규정에 의한다. (개정 10. 11. 25.)

제28조(전종지도자 훈련의 주관) 전종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업무는 사무총국이 담당한다.

제29조(전종지도자의 자세) 전종지도자는 충실한 한국스카우트의 요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1.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진행한다.
2.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근무에 충실을 기한다.
3. 자원지도자의 봉사활동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충실한 봉사자가 된다.
4.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회피함이 없이 타인의 선봉에서 난관을 극복한다.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스카우트 활동의 한 가족으로 봉사한다.

제30조(전종지도자의 자격 유지) 전종지도자는 해당 직책에 임명됨으로써 그 자격이 유지되며, 매년 연차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31조(전종지도자의 자격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종지도자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연차등록을 필하지 않을 때
2. 중앙명예회의에 의해 자격정지 또는 제적 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 되었을 때
3. 법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4.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 하거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부 칙

1. 이 규정은 197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76년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78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2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6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8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8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1999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0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자격을 받은 훈련교수와 훈련부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중앙훈련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00. 2. 25.)
14.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1.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이 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3.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훈련부교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심의한다. 단, 훈련부교수과정 수료 후 2년 이상 경과 자격 구비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1. 9. 22.)
24.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훈련교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심의한다. 단, 훈련교수과정 수료 후 2년 이상 경과 자격 구비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1. 9. 22.)
25.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6.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7.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8. 이 규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9. 이 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